

#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65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2. 9.

발 의 자 : 김재원 · 황운하 · 김한규  
백선희 · 박정현 · 강준현  
장종태 · 김교홍 · 박은정  
이기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, 배타적발행권자, 출판권자,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,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, 임직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,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,

임직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임직원 등의 지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지위에 따라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며 저작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3 신설).

##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6조의3(이해충돌 방지·관리 및 신고)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·직원,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(이하 “구성원”이라 한다)가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,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, 이해충돌 방지·관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

② 구성원은 매년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·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
2.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
3.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

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에 따라

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·절차·방법 및 구성원 범위의 기준,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·방법,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<u>제106조의3(이해충돌 방지·관리 및 신고)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·직원,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(이하 “구성원”이라 한다)가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,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, 이해충돌 방지·관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성원은 매년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·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</u></p> <p><u>2.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</u></p> |

보상금

3.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

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·절차·방법 및 구성원 범위의 기준,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·방법,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